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2211

제안년월일 : 2024년 11월 21일
제 안 자 : 보 건 복 지 위 원 장

1. 수정이유

○ 민간위탁과 달리 「지방자치법」 공공위탁 근거 규정 이외에 공공위탁 선정· 절차 등의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공위탁 시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시의회의 동의나 사전 보고를 하도록 조문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연기관은 “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” 공공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함. (안 제11조제1항)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 중 “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2호에 기관에 공공위탁할 수 있다.”를 “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2호에 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제6조제2호의 기관에 공공위탁할 수 있다.	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제6조제2호의 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제6조제2호의 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